「2021/22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인도네시아 신수도 자금조달방안 2차 - 이전적지 매각 및 국부펀드 활용

과 업 지 시 서

2021. 1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 목 차

[. J	과업지시서	1
	1. 개요	1
	2. 과업기간	4
	3. 과업내용	4
	4. 과업의 일반원칙	. 8
	5. 과업수행 방법	11
	6. 과업성과품 제출	12
	7. 보안대책	15

## I. 과업지시서

## 1. 개 요

- □ 과업명 : 「2021/2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인도네시아 신수도 자금조달방안 2차 - 이전적지 매각 및 국부펀드 활용
  - ※ 본 과업은 1차년도 EIPP 과업인 「신수도 개발 자금조달 방안」의 연속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INA)의 국부펀드(SWF)를 통해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자보데타벡 지역의 부동산 매각 및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보다 고도화되고 구체적인 단계임

## □ 과업배경

- 수도이전 개관
  - 자카르타와 자바섬의 인구집중 및 경제력 편중이 심화되고 심각한 교통 체증과 대기오염, 물 문제, 지반침하 등 도시문제 대두
    - \* 자카르타 수도권에 3천만명 밀집, 전체인구의 57%가 자바섬 거주
  - 정부기관이 자카르타와 보고르에 분산되어 있어 공공행정 효율성이 저하
  - 이에, 인니정부는 자바섬 밖 동부 칼리만탄섬(Kutai Kartanegara군, 北 Penajam Paser군)에 전략적 수도이전을 시행하여 불평등, 불균형성장 문제를 해결하고 인니만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를 건설코자 계획하고 있음



#### ㅇ 제약요인

-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을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전개발 자금으로 약 330억 달러(40조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이전을 위해 국가 예산에서 최소 금액을 사용하고, 자금 대부분은 PPP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기업과 국유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거 대통령령 No.38/2015 PPP 법안 제정과 VGF(Viability Gap Fund) 등을 설립하는 등 민간자본 유인 장치를 마련했으나 환리스크의 발생위험, 토지확보 문제, 사업 규모, 자금조달 및 예산 제약, 기타 비공식적 제반 애로사항 등의 문제로 민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음
- 인도네시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공공 및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적 투자 재원 마련과 체계적인 자금조달 방안 수립은 수도 이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 요한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함

## ○ 협력국 정책 부합성

-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참여를 늘리는 전략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INA)를 통한 것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투자 유입을 늘리고 자산의 장기적 가치를 강화하고자 2020년 INA를 설립하였고, INA의 주요 임무는 (1) 자산최적화 (2) 해외 및 현지 파트너와 공동 투자하여 투자 유치 (3)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
- INA는 자체 투자 펀드를 설립하거나(독립적으로 또는 제3자와 제휴를 통해) 제3자가 설립한 투자 펀드에 참여하여 투자할 수 있음. INA는 자체 투자와 주요국 투자를 바탕으로 국부펀드(SWF)를 조성하고, 주요 투자 파트너와 공동 투자 형태로 다수의 하위펀드를 구성해 도로, 공항, 항만 등 다양한 국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계획임.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략 우선 사업이자 주요 사업인 신수도 개발 프로젝트는 IN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이전에 따른 정부 자산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1차년도 EIPP 과업 중 하나인 「신수도 개발 자금조달 방안」을 통해 한국의 경험 공유를 요청한 바 있음. 자보데타벡 지역의 잔존 자산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은 수도이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자보데타벡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

#### ㅇ 국내 정책 부합성

- 한국 정부는 글로벌 PPP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2018년 한국해외 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KIND)를 설립하였음. KIND는 우리 기업들에게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지원, 양질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 금융조달 능력제고 등 투자개발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PPP 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KIND는 글로벌인프라펀드(GIF) 및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등 건설 특화 펀드를 조성·운용하여,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건설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자금조달방안 2차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신수도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운용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종전 부동산 매각 및 처리 사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공재산 매각 및 신수도 투자재원 방안에 주는 시사점이 큼

#### ○ 사업 필요성

- 수도 이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수십조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의 소요가 요 구되며, 자금 대부분을 PPP를 통해 조달한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 수 립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 제시가 필요함
-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INA)의 설립과 함께 신수도 개발사업의 경쟁력이 기대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전적지 관리 및 국부펀드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 및 잠재 투자자 대상 신수도 개발 프로젝트 투자 실현을 위한 경제 및 재정 평가 도구(예비타당성)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함

## □ 과업목적

- 상기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이전적지 및 국부펀드 활용방안과 한・인니 금융협력을 위한 정책 자문 제공을 통한 신수도 자금 조달 방안 고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인니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과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반영하여야 함
- ※ 과업수행자는 기획재정부의 2020/2021 인니 EIPP(경제혁신파트너쉽프로 그램), 인니 K-City Network를 통해 수행될 신수도 건설관련 타 정책자 문과 기타 인니정부의 MP, 도시설계 내용을 반영하고 연계된 결과를 제 시하여야 함
- ※ 과업수행자는 인니 정부 및 현지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협업하여야 하고, 필요시 사안별로 전문기관에 하도급 등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e.g. 현지 시장조사 등은 현지 리서치 및 마케 팅 수행경험이 있는 글로벌 서비스(자문) 회사에서 시행)
-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0일

#### 3. 과업내용

# [공동연구] 협력대상국의 주제에 대해 한국 경험을 토대로 개발계획 및 계획수립 체계 마련

- □ 국부펀드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전략
  - 해외 국부펀드 운용 사례를 통한 현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INA) 및 국부 펀드(SWF) 구성 및 운영 검토
    -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부펀드를 정부 투자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 국제 관행이며. 이를 인도네시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INA 국부펀드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INA 자본금 확충에 필요한 금융 조달 자문 및 글로벌 투자자 유치에 대한 IR 활동 방안 도출
- 한국의 국부펀드 사례를 통한 INA의 운영 조직 및 투자 편람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ㅇ 국부펀드 및 기타 투자수단을 통한 국내 및 해외 투자자 유치전략
- 국부펀드의 신수도 관련 우선 투자 인프라 사업발굴 및 IKN 투자 전략
  - 공동 투자 또는 제휴를 통해 인프라 시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활용 계획 및 인프라 사업을 통한 IKN 투자 전략
- 신수도 개발 경제 및 재정 평가 도구(예비타당성) 수행방안 검토
  - 신수도 개발사업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유망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프라 중심의 투자플랫폼인 INA의 자산관리 및 가치 창출 이니셔티 브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제안
- □ 자보데타벡 지역 정부 자산(이전적지) 매각 등 활용방안
  - 한국의 균형 발전 전략에 따른 정부 기관 및 공기업 이전 정책 배경 검토
    - 국유재산 및 공기업 재산 매각 절차
    - 이전적지 활용 방안(매각/임대 등)
    - 매각 및 이전에 따른 지자체 협력 사례
    - ※ 한국 경험을 통해 기본방향. 추진과정. 방법. 법적 근거. 현황. 특성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 제시.
  - 자보데타벡 지역 이전적지 활용방안 모색
    -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소유 자산 가운데 신수도로 이전될 자산/부동산/ 건물/시설 도출
    - 신수도 이전계획에 따라 공실 발생예정 자산 목록 및 순서 도출
    - 이전적지/자산 특성/위치에 따라 매각, 임차, 사용권 부여 등 최적의 활 용방안을 선정할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언

- \* 가이드라인은 모든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 지역 경쟁력 보전과 토지 및 공간 구조의 효율적 활용 고려
- 매각, 임차, 사용권 부여 등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 추산, 신수도 자금조 달 반영방안 마련
- 이전적지 주변부지 개발 방안 제언

## □ 한-인니 민/관 금융협력 방안

- 국부펀드 분야
  - 한국 민/관 금융기관\*의 인니 신수도 이전 특수목적 펀드 참여 또는 공 동 운영(Co-GP) 방안 검토 및 제시
  - \* KIC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NPS), PIS/GIF 펀드, 수출입은행 및 민간 상업은행
  - 한국 민/관 금융기관 대상 세미나 (간담회), 투자설명회 개최
- 자보데타벡 지역 정부 자산 분야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국·공유재산관리 개발" 업무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인니 정부 자산관리를 위한 한-인니 양국간 협력 방안 (AMC-JV 설립 등) 검토 및 제시

#### [역량 강화]

- □ 주제별 양국 관련기관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정책실무자의 역량을 제고
  - 한국의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복청 등), 연구 기관(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수도이전, 국가영토 정책개발, 사회기반시설 및 민간 투자 관련 프로젝트, 한국의 PPP 사례와 관련한 한국 정책 및 실무경험을 공유
  - 세미나, 강의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방안 및 수도이전 추진을 위한 정책실무자의 역랑을 제고

# [Market Sounding]

- □ 신수도에 대한 민간 섹터의 투자관점에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의견 (Market Sounding) 조사
  - 잠재적인 한국 민간사업자들과 사업에 관련된 실행 가능성, 민간사업자의 사업실 행 역량, 시장의 사업수용능력, 시장의 성숙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취합
  - 이를 통해 신수도 프로젝트와 관련한 한국기업의 시각을 반영

## [정책자문 및 보고서 발간]

□ 고위정책결정자 및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 제공,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및 협력국 전달

## [경제협력 강화]

□ 신수도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섹터 투자관점에서 한국기업(금융기관, 공기업,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등)을 대상으로 시장 의견(마켓사운딩) 조사,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 등

## 4. 과업의 일반원칙

## □ 자료활용

-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 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 □ 과업수행원칙

- 최종낙찰자(이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 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
  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 법률, 기술,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 자(계약상대자, 외부전문기관 포함)가 부담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 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

#### □ 과업의 변경

-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 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 일반조건

-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 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영수증 등)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 그램 운영 규정』,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등 관계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

#### □ 특별조건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
-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할 경우,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성과물 작성

-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 기법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납품해야 함
-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 양식,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 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해야 함
- 공정보고, 현지조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 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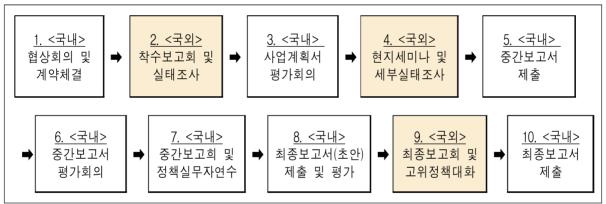
### □기타

-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 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 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국외출장 및 정책실무자연수 개최 시 출장자 및 연수 참가자가 여행자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보상 한도 및 범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설정될 수있도록 함. 아울러, '국외 체류 시 안전매뉴얼'에 따라 안전지침, 위기상황대처 및 여행경보제도 안내를 통한 안전관리 자체 교육을 실시함

-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음
- 과업수행사의 연구책임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발주자와 협의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 성과품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 후 발가하여야 함
- 과업내용(주요 결과물)은 발주자 및 협력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 연구책임자는 모든 현장 활동 및 우리 공사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해야 하 며, 전 과업범위에 대해 검토 및 감독을 이행해야 함

## 5. 과업수행 방법

#### <2021/22 EIPP 사업 단계>



※ 구체적인 일정은 실제 사업진행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현지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추진방안 마련

#### □ 일반사항

-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통합 실시),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통합 실시),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통합 실시),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 대화(통합 실시), 국내공유세미나\* 등을 수행
  - \*국내공유세미나는 사업종료 이후 KIND에서 주관하며, 요청시 사업수행 기관 (연구진)은 동 세미나에서 연구결과물 발표를 수행

- 필요시 각 주제별로 주제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현지 전문가
  를 고용하여 현지 컨설턴트로 활용하고 가능하면 공동연구로 추진
- 기타 모든 사업의 기획·집행·결과 공유 활동 등은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 운영지침(기획재정부, 2019.10.2.) 에 따라 실시

## □ 현지 실태조사

- 사업대상국의 인문, 자연, 경제,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 조사자(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
-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 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 월간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

○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률을 작성하여 용역진도 보고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함

#### 6. 과업성과품 제출

####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 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착수 보고회는 현지에서 수행(국문, 영문 보고PPT 준비)
- \* COVID-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
- 제출방식 : 공문 및 이메일(착수계,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 □ 금차 최종보고서

- 내용: 진행된 사업의 주제별 주요 진행경과를 포함, 협력국 현황 분석 작성
- 사업진행 경과보고서(국문 5페이지 이상), 주제별 보고서(국문 10페이지) 각 1부
- 제출방식 : 이메일

# □ 사업 단계별 활동계획보고서(국·영문)

○ 내용 : 현지조사, 보고회(착수·중간·최종), 정책실무자연수 활동 계획 등

○ 기한 : 활동 착수일자 2주 전

○ 제출방식 : 이메일

## □ 사업 단계별 활동결과보고서(국문)

○ 내용 : 현지조사, 보고회(착수·중간·최종), 정책실무자연수 활동 결과 등

○ 기한 : 활동 종료일자 2주 내

○ 제출방식 : 이메일

## □ 사업계획서(국문)

○ 내용 : 확정된 과업 목표 및 범위, 사업 추진계획 및 보고계획

○ 기한 :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후 2주 내

○ 제출방식 : 공문 및 이메일

##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및 세부실래조사 및 연구시 확인한 주요 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 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기한 : 현지 중간보고서 평가회 개최 2주전
- 제출방식 : 공문 및 이메일
- 중간보고회는 현지 수도이전 관계공무원 참석하 정책실무자연수와 연계 하여 국내에서 수행(국문, 영문보고 PPT 준비)
  - \* COVID-19로 정책실무자 초청연수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

- 계약 해당년도의 연구 진행 내용 등에 대해 금차최종보고서를 작성·제 출하여야 함
- 제출방식 : 공문 및 이메일(중간보고서)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 단,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200페이지 이하, 국문·영문)
-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국·영문 각 30부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종보고서, 기타 참고자료 및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필요시 인도네시아의 현행 규정 및 양식을 준수하는 요약본 별도작성 제출(국·영문·인니어 각 10부)
- 기한 : 최종보고서 초안은 최종보고서 평가회 개최 3주 전 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제출
- 최종 보고회는 현지에서 수행(국문, 영문 보고PPT 준비)
- \* COVID-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
- 제출방식: 공문 및 이메일, 인쇄본(최종보고서), USB 1세트(성과품 관련 모든 자료)

#### □ 사업종료보고서(국문)

○ 내용 : 사업개요, 수행과정, 관리 및 사업성과 평가

○ 기한 : 계약완료 후 영업일 20일 이내

○ 제출방식: 공문 및 이메일

# □ 수정보고서

-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기재부 및 KIND내부위원 외 분
  야별 자문평가위원의 자문(또는 평가) 과정을 별도로 거치며 자문(또는 평가)의견에 따른 수정보고서 제출
- 제출방식: 이메일

- ※ 착수보고서, 사업계획서 외 보고서 제출기한, 보고서/USB 제출부수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발주처는 사업활동 점검을 위해 별도 보고서 제출 요청 가능
- ※ 점검회의 실시(최소 3회): 1차 점검회의(성과품: 사업계획서), 2차 점 검회의(성과품: 중간보고서 및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3차 점검회의(성 과품: 최종보고서 및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등

#### 7.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 (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 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 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 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 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 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